



제1조 (약관의 적용)

- ① 「부산은행 장병내일준비적금」(이하 '이 적금'이라 합니다) 거래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,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'예금거래기본약관'및 '적립식예금약관'을 적용합니다.
- ② 이 적금의 거래에 있어서 발생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사항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을 적용합니다.

제2조 (가입대상)

- ① 이 적금의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으로 가입시점에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현역병, 상근예비역, 의무경찰, 해양의무경찰, 의무소방원, 사회복무요원, 대체복무요원에 한합니다.
 - 1. 이 적금 신규일 기준으로 남은 의무복무기간이 1개월 이상
 - 2. 가입대상임을 증빙하는 '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'원본 제출 (단, 비대면 신규 시 자격검증서비스*로 검증된 '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' 를 제출)
 - * 자격검증서비스 : 유무선 인터넷 웹사이트 및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에서 본인의 금융분산 ID(결제원과 각 은행이 기 구축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으로, 디지털증명서를 발급·검증·관리하는 시스템)를 통해 '자격검증정보', '자격검증확인'등을 거치는 일체의 서비스
- ② 이 적금은 공동명의로 가입할 수 없으며, 양도가 불가합니다.
- ③ 이 적금은 출시 금융기관별 1인 1계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.

제3조 (예금과목 및 계약기간)

- ① 이 적금의 예금과목은 정기적금으로 하며, 계약기간은 1개월~24개월 이내 일단위로 합니다.
- ② 이 적금의 만기일은 고객의 전역(또는 소집해제)예정일로 합니다.
- ③ 이 적금의 계약기간은 변경될 수 없습니다.

제4조 (저축은행 및 저축방법)

이 적금은 회차별 최소 1만원 이상 원단위로, 고객이 설정한 은행별 비과세 저축한도 범위내에서 매월(월 초일부터 말일까지) 30만원 이하 금액을 만기일 전일까지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습니다. 단, 「장병내일준비적금」상품을 판매하는 모든 은행을 합산하여 고객의 최대 저축한도는 월 55만원이며, 동 저축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은행별 월 30만원까지 저축 가능합니다.

제5조 (이율의 적용)

- ① 이 적금의 만기이율은 기본이율과 우대이율을 합하여 계약기간 동안 적용합니다.
- ② 기본이율은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에 고시한 계약기간별 이율을 적용하며, 우대이율은 제8조에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합니다.

제6조 (세율의 적용)



① 이 적금은 비과세저축으로만 가입이 가능하며, 이 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》 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. 다만, 관련세법('조세특례제한법'및 '농어촌특별세법')이 개정될 경우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- ②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소득세가 부과됩니다.
 - 1. '조세특례제한법'제 91조의 19 제①항 및 제②항에서 정하는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이 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됩니다.
 - 2. 계좌의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「소득세법」제14조 제3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같은 호에 따른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소득세가 부과됩니다.
 - 3. 이 적금의 만기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됩니다.

제7조 (제한사항)

- ① 이 적금은 일부해지 및 계약기간 변경은 불가하나, 질권설정은 가능합니다.
- ② 이 적금을 2025년 1월 1일까지 가입한 계좌는 1회에 한하여 비과세저축 한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. 단, 2025년 1월 1일까지의 비과세저축 한도변경 이력은 횟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.
- ③ 이 적금의 신규일이 2025년 1월 2일 이후인 계좌는 비과세저축 한도변경이 불가합니다.
- ④ 이 적금의 비과세저축 한도는 5만원 단위로만 설정이 가능합니다. 단, 이 적금을 2025년 1월 1일까지 가입한 계좌는 기존에 설정한 비과세저축 한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.

제8조 (우대이율)

이 적금 만기시점에 부산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(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포함)을 보유하고 있는 고객에게는 만기해지시 0.10%p의 우대이율을 지급합니다.

제9조 (중도해지이율)

고객이 만기일 전에 이 적금의 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가입일로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가입일 당시 고시한 중도해지 이율 산식에 의거 산출된 이율로 셈한 이자를 원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.

제10조 (만기 후 이율)

고객이 이 적금의 약정한 지급기일 이후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지급기일로부터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지급일 현재 고시한 이 적금의 만기 후 이율로 셈한 이자를 원금에 더하여지급합니다.

제11조 (1% 이자지원금)

- ① 이 적금은 고객이 아래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% 이자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, 1% 이자지원금은 이 적금 가입일부터 만기일까지 납입금액 건 별로 실제 예치일수기 간 동안 연 1%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합니다.(단, 23.12.31납입분까지에 대해서만 적용)
 - 1. 적금 만기해지
 - 2. 적금 만기일과 전역일(또는 소집해제일)의 일치 (단, 고객이 만기일 전에 전역하는 경우 적금의 만기일을 전역일로 간주)



- 3. 만기 해지시 전역일이 명기된 아래 확인서 원본 제출
 - 전역증, 병역증, 병적증명서, 복무사실확인서 중 택 1
 - (단, 비대면 해지 시에는 자격검증서비스로 제출된 '장병내일준비적금 전역 확인서'로 전역일을 확인하며 이 경우 전역일이 명기된 확인서 원본 제출은 생략 가능)
- ② 고객이 만기 해지시에 위 ①항 3호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1% 이자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 추후 이를 은행에 재청구할 수 없습니다.
- ③ 1% 이자지원금은 장병 목돈마련을 위해 국가 예산으로 지급되는 저축 지원금으로 정책 및 관련 법률 등이 변경될 경우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.
- ④ 1% 이자지원금 지급 시행일은 2021년 10월 14일이며, 시행일 이후 만기 도래하여 만기해지한 계좌에 한하여 적용됩니다. 단, 이 적금은 비과세 저축으로만 가입 가능한 과세특례 전용 상품으로 관련 세법에 따라 과세특례 적용이 불가능한 고객의 경우 1% 이자 지원금 지급이 불가합니다.

제12조 (매칭지원금)

- ① 매칭지원금은 납입 당시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금액으로 합니다.
- ② 매칭지원금의 지급 대상 및 제출 서류 등 지급 조건은 제11조에서 규정한 1% 이자지원금 지급 조건과 같습니다.
- ③ 매칭지원금은 은행에서 지급하는 이자와 달리, 만기해지시 은행에 제출한 희망 계좌로 국 방부(국군재정관리단) 및 병무청에서 직접 지급하는 저축 지원금입니다.
- ④ 매칭지원금은 정책 및 관련 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시기별로 지원금액이 상이할 수 있으며,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. 지원금액 변경내용은 국방부 나라사랑포털 및 은행 홈페이지 공 지사항 또는 병역법 시행령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⑤ 매칭지원금 지급 시행일은 2022년 1월 1일이며, 시행일 이후 납입하는 금액부터 적용됩니다. 단, 이 적금은 비과세 저축으로만 가입 가능한 과세특례 전용 상품으로, 관련 세법에 따라과세특례 적용이 불가능한 가입자의 경우 매칭지원금 지급이 불가합니다.

부 칙

제1(시행일) 이 약관은 2018년 8월 29일부터 시행합니다.

부 칙

제1(시행일) 이 약관은 2019년 2월 18일부터 개정 시행합니다.

부 칙

제1(시행일) 이 약관은 2019년 4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합니다.

부 칙

제1(시행일) 이 약관은 2021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하며, 변경된 약관은 시행일 이후 가입

고객부터 적용됩니다.



부 칙

제1(시행일) 이 약관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개정 시행합니다.

부 칙

제1(시행일) 이 약관은 2022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합니다.

부 칙

제1(시행일) 이 약관은 2023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합니다.

부 칙

제1(시행일) 이 약관은 2024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합니다.

부 칙

제1(시행일) 이 약관은 2024년 6월 3일부터 개정 시행합니다.

부 칙

제1(시행일) 이 약관은 2025년 1월 2일부터 개정 시행합니다.

부 칙

제1(시행일) 이 약관은 2025년 3월 12일부터 개정 시행합니다.

※ 이 약관은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및 부산은행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.